

워크 비자 관련 확대 및 변경 사항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



2015년 12월 20일 부터 한-뉴간 체결된 FTA (자유무역 협정)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이민성의 현행 워크 비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보다 많은 한국인에게 다양한 카테고리의 워크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적 이동 활성화 제도의 도입은 양국간의 교류증진에 크게 이바지 하며 이민의 문이 열릴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12월 20일 부로 확대 시행될 워크 비자는 3가지 카테고리 입니다.

1. Special Work
2. Primary Sector Trainee
3. Working Holiday

1. Special Work

뉴질랜드 이민성은 한국이 신규 Special Work 카테고리 해당 국가 리스트에 추가 되었고 2015년 12월 20일부로 적용이 됨을 발표하였습니다. Special Work가 발효됨에 따라 특정 직업군내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관련 직업군에서 full-time job offer를 받을경우 최대 3년의 워크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워크 비자와 달리labour market check가 더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인원이 각 분야별 최대 50명, 모든 분야 200명이므로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Special Work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반드시 만족되어야 합니다.

- 1) 신청서 제출과 관련 신청비용 지급
- 2) 이민성이 명시한 조건 (W2.10)을 만족하며, 이민성 Occupation List (한국 투어 가이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태권도 사범, 한의사, 한국어 교사 등)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full-time job offer 를 받아야 함
- 3) 등록, 자격증, 경력 관련하여 이민성이 명시한 조건 (WI.19.10)을 만족해야 함
- 4) 이민성이 명시한 건강과 인성 필요조건을 만족해야 함
- 5) 이민성이 명시한 bona fide 신청인이라는 필요조건을 만족해야 함

6) 신청시 한국 거주자이여 함. 단, WI19.5(d)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워크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아래와 같이 두가지 조건하에 비자와 입국 허가가 발급됩니다.

- 최초 뉴질랜드 입국일시는 반드시 승인일로부터 6 개월 이내가 되어야 함
- Job offer 의 기간에 따라 최대 3 년 동안 뉴질랜드 복수 입국 가능

만약 최초 워크 비자가 3년 미만으로 유효할 경우, 신청인이 필요조건을 충족한다면 3년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추가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크 비자를 받을 경우 반드시 명시된 직업군에서 명시된 고용인의 업체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3년의 워크 비자 기간이 종료되고 재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뉴질랜드 외에서 3년 거주 후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2. Primary Sector Trainees

한국은 Special Work와 더불어 Primary Sector Trainees 카테고리에도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인에게 직업관련 공부와 실무연수를 허용하는 워크 비자가 발급 가능합니다.

- 1) Primary Sector Trainee 조건이 주어진 국가에 의해 신청인은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을 받아야 함
- 2) 해당국가 (한국의 경우 최대 50 명)에 지급된 할당 인원이 정원을 초과 하지 않을시
- 3) 학업 필요조건 (study requirements)이 만족되어야 함
 - (i) 실무연수를 시작전 최소 12 주동안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해야 함
 - (ii) 반드시 수준있는 교육기관에서 공부해야 함 (대학 또는 NZQA 가 지정한 최상위 등급인 Category One 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4) 실무연수 필요조건 (work placement requirements)이 만족되어야 함. 신청인은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분야와 관련된 회사에서 실무연수를 최대 9 개월까지 할 수 있음. 이민성은 교육기관에게 아래와 같은 책임을 부여함.
 - (i) 실무연수 준비, 모니터링 및 기록 보유
 - (ii)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실무연수 대안책 준비
 - (iii) 비자 조건이나 고용 계약서가 위배될시 이민성에게 통보만약, 교육기관이 상기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민성에서 판단할 경우 워크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 5) 신청인은 뉴질랜드 거주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과 입원보험에 가입할것을 동의해야 함
- 6) 신청인은 이민성이 명시한 건강과 인성 필요조건을 만족해야 함
- 7) 이민성이 명시한 bona fide 신청인이라는 필요조건을 만족해야 함

신청인은 반드시 뉴질랜드 고용법을 준수하는 고용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최저 시급을 받아야 하며, 워크 비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 최대 12 개월까지 뉴질랜드에 복수 입국이 가능함
- 특정 학교/학원에서 공부하는것이 가능함
- 최대 9 개월까지 primary sector 고용인 밑에서 근무 가능함

3.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제한 인원은 현행 년 1,800명에서 년 3,00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고용인 밑에서 3개월 이상 근무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폐지 되었습니다. Working Holiday 워크 비자를 받기위해서 신청인은 반드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한국 국적자
- 뉴질랜드 거주기간 동안 통장 잔고가 최소 NZ\$4,200
- 뉴질랜드 거주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과 입원보험 가입

신청이 허용되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됩니다.

- 신청자가 뉴질랜드가 아닌 타국에 있을 경우 비자가 발급된 후 12개월 이내에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하며, 첫 입국일 이후 최대 12개월까지 뉴질랜드에 복수 입국이 가능함
-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있다면, 최대 12개월까지 뉴질랜드에 복수 입국이 가능함



QUEEN CITY LAW

Queen City Law는 오클랜드 시티에 위치한 뉴질랜드 최고의 이민법 전문 로펌으로 대표 변호사인 Marcus Beveridge 변호사는 20년 이상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뉴질랜드 변호사 협회 이민 위원회 위원장 (Convenor of the New Zealand Law Society Immigration Committee)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Queen City Law는 뉴질랜드 법조계에서 권위와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New Zealand Law Awards에서 8년 연속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ueen City Law는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고의 이민법 전문 로펌 Queen City Law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민준 (Max Shin) 변호사

Email: max@qcl.co.nz

Office: 09 970 8810

Address: Level 8, 203 Queen Street, Auckland Central, Auckland

Disclaimer:

We have taken every care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given is accurate, however it is intended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it should not be relied upon in individual cases. Professional advice should always be sought before any decision or action is taken